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07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진종오·김태호·서천호

박정훈ㆍ이종배ㆍ윤영석

최보윤 · 김기웅 · 정성국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생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②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제2호에 따른 교육활동</u>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		
	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 지원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